

개인축산업자의 법인전환(Ⅱ)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개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 (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지난호에 이어 축산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정리해 본다. 이번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떤 법인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1. 농업법인 중의 선택기준

1) 소득세의 절세목적

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소득금액에서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을 공제한다. 즉, 조합원이 5명이면 연간 6,0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축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공제받게 된다. 사실상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부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설립후 4기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의 감면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수억원 이내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더 절세효과가 많으며, 이미 상당한 사육규모수준이어서 연간 이익이 수십억원 정도 발생되고 있는 축산업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더 많은 절세효과가 있을 것이다.

2) 구성원의 제약조건

농업회사법인은 개인사업주 단독 또는 가족만으로도 주주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최소한 농업인인 조합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 자녀, 형제 등으로 5명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할 수 있으면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해도 무방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무리

하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재산상, 법률상의 문제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3) 투자자의 모집 또는 공동투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원칙적으로 지분율과 상관없이 조합원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분율에 의한 경영이 곤란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을 경우 조합원 전원의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고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조합원이 있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계획하는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

4) 대외적인 신인도

농업회사법인은 그 상호에 주식회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상사상의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으며, 필요하면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주식회사와 합병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할 수도 있다.

5) 기업 상속의 목적

농장을 포함한 사업체를 자녀에게 이전해 주고자 하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법인전환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주주의 구성이나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 법률적인 융통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6) 법인 전환 선택

이상의 목적과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법인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단순히 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이 더 중요하다면 영농조합법인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더 중요시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2. 법인세의 산출방법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법인세의 계산방법

$$\text{소득세액} = \text{소득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세액감면}$$

과세표준	세율	비고
1억원이하	13%	2009년도부터 10%로 개정될 예정임
1억원이상	25%	2009년도부터 22%로 개정될 예정임

* 주 : 세액공감면은 7월호에서 설명한 축산업자의 소득세산출방법 참조

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액

매년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함.

(예)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5명이고 연간매출액이 50억원, 축산업의 소득금액이 1.5억인 경우(총업원 50명 미만인 것으로 봄)

- ▶ 산출세액 : $150,000,000 \times 25\% - 12,000,000 = 25,500,000$ 원
- ▶ 영농조합법인 감면 : $25,500,000 \times (60,000 / 150,000) = 10,200,000$ 원
- ▶ 법인세액 : $25,500,000 - 10,200,000 = 15,300,000$ 원

3)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액

축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줌.
 (예) 농업회사법인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축산업의 소득금액이 1.5억원인 경우(종업원 50명 미만인 것으로 봄)

- ▶ 산출세액 : $150,000,000\text{원} \times 25\% = 12,000,000\text{원}$
 $= 25,500,000\text{원}$
- ▶ 농업회사법인 감면 : $25,500,000\text{원} \times 50\% = 12,750,000\text{원}$
- ▶ 감면후 세액 : $25,500,000\text{원} - 12,750,000\text{원} = 25,500,000\text{원} \times 0.3 = 5,100,000\text{원}$
- ▶ 최저한세 : $150,000,000\text{원} \times 10\% = 15,000,000\text{원}$

- ▶ 법인세액 : 5,100,000원과 15,000,000원중
 큰 금액=15,000,000원

4) 양 법인간의 비교

소득금액이 1.5억원인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은 765만원인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1,500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부담 액이 훨씬 적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

- '개인축산업자의 법인전환(Ⅲ)'는 다음호에 계속…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 관련 제도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 내로 2일 단축하여 200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사전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일부 창업자의 경우 납품계약, 금융거래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료상·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확인 대상자도 현지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발급하고 있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1만ℓ 이상 사용자는 전자카드를, 1만ℓ 미만 사용자는 종이쿠폰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이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된다.